천주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02-777-0641 팩스:02-775-6267 메일:chrc@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cathrights.or.kr

문서번호	: 천인2025-0418-01
수 신	: 경찰청장
참 조	:
발 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사권 관련 질의**
날 짜	: 2025년 4월 18일(금)
문 의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0-6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3. 최근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에 따라 이를 고소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해당 경찰관서의 민원실 담당자는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정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수사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특별사법경찰대(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정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대해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고소인이 위 범죄에 관한 고소장을 일선 경찰관서에 접수하기를 원할 때는 △일단 접수한 후, △수사권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고소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2025년 4월 25일(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